

# 요트보험 상품안내

Yacht Insurance

## CONTENTS

I. 요트보험(상품명: 선박보험) 이란?

II. 요트보험 상품내용

III.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

IV. 보험료 예시

V. 자주 묻는 질문 (FAQ)

## I. 요트보험(상품명: 선박보험)이란?

요트(수상레저기구)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선체 손상이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보험

### 요트보험 가입대상

- ✓ 전국 마리나\* 및 그와 유사한 항구 내에서 관리 중인 파워요트 및 세일링요트

\*마리나: 해양수산부 마리나 정보화시스템 기준('26년 5월 기준 총 72개소)

- ✓ 개인용, 사업용, 업무용 요트 \*기구용도 확인 필수

|     |                                         |
|-----|-----------------------------------------|
| 개인용 | 소유자 본인의 레저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용도 (예) 소유자의 취미 용도 |
| 사업용 | 타인의 레저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용도 (예) 수상레저사업 행위      |
| 업무용 | 소유자 본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용도 (예) 해양 조사 등     |

- ✓ 초고가, 고령의 요트는 개별 협의

### 요트보험의 필요성

- ✓ 고가의 요트 자산 보호
  - 요트 선체 손상에 대한 보험 담보 제공
  - 보장 사고 : 화재, 폭발, 침몰,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부두와의 충돌 등
- ✓ 요트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배상책임 대비 (대인, 대물)

## II. 요트보험 상품내용

### 보상하는 손해

#### ✓ 선체 사고

-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해 요트 자체에 발생한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
-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아래의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을 보장합니다.

- 1) 화재
- 2) 좌초, 침몰, 악천후, 태풍, 해일 등 항행 가능한 수면 고유의 위험
- 3) 다른 요트나 부두시설과의 접촉
- 4) 항공기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 또는 그로부터 추락하는 물체와의 접촉
- 5)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 아래의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목적물의 멸실 또는 손상은 요트 소유자 또는 요트 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가 없었을 경우 보상합니다.

- 1) 선용품, 장비, 연료유 등의 선적이나 양하 중 발생한 사고
- 2) 폭발
- 3) 요트 전체 또는 구명선의 도난. 통상의 부착방법에 추가하여 도난방지 장치로 안전하게 요트에 부착된 외부 모터, 장비 및 기기의 도난

#### ✓ 배상책임 사고

- 요트 운항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보상
- 대인 배상 : 요트 탑승자, 수영객, 수상스키어 등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 대물 배상 : 다른 선박, 항만 시설, 마리나 시설, 양식장 등 타인의 재물 파손
- 배상책임 유무를 가리기 위한 소송 등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비용 보장

## II. 요트보험 상품내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보험 가입 시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예 : 개인용 요트로 보험에 가입한 후 사업용으로 운항하다가 발생한 사고)
-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3) 자연소모, 마모, 녹, 부식, 노후화로 인한 마모나 정비 불량으로 인한 기계적 고장
- 4) 선외 모터 이탈 및 추락 사고
- 5) 무자격자가 운항하여 발생한 손해
- 6) 1인 항해 금지
- 7) 개인물품 및 고가품, 예술품, 소모품, 낚시장비 또는 계선장치
- 8) 마리나를 벗어나 육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 (추가특별약관 개발 예정)
- 9) 최대 승선 정원 초과 금지
- 10) 경주 중 발생한 사고 (추가특별약관 개발 예정)
- 11) 전쟁, 파업, 폭동 위험은 담보하지 않음
- 12) 다른 요트나 선박에 의해 예인되는 중 발생한 사고
- 13) 타 물체와의 충돌 없이 바람에 의해서 찢어지거나 유실된 돛이나 보호덮개
- 14) 보장사고와 무관한 도금 및 수선
- 15) 설계나 건조상의 하자를 보정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 16) 악천후로 인해 발생한 모터 및 연결기기, 전기장비 및 배터리 손상  
(타 선박이나 부두와의 충돌, 좌초로 인한 모터, 연결기기, 전기장비, 배터리 손상은 보장함)
- 17) 수상스키어 본인의 배상책임
- 18) 벌과금 및 징벌적 배상책임

## II. 요트보험 상품내용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 개인 또는 법인.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입 주체
- 피보험자 : 보험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주체

### 보상한도액 및 자기부담금

| 구분      | 가입금액 /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
| 선체 담보   | 선체 가입금액*                                            | 선체 가입금액의 10%<br>단, 아래의 경우 25% 추가 (총 35%)<br>① Windstorm 으로 인한 사고 시<br>② 선령 25년 초과 요트의 전손 사고 시 |
| 배상책임 담보 | [대인] 인당 1.5억원<br>[대물] 사고당 5~20억원<br>총보상한도액 : 5~20억원 | 손해액의 10%                                                                                      |

\*선체 가입금액 : 요트보험은 기평가보험 보험으로, 계약 체결 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협의를 통해 요트의 선체 가입금액을 정합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선체 가액을 증빙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

- 보험기간 : 1년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 타 보험과의 비교

| 구분    | 요트보험                        | 수상레저종합보험              |
|-------|-----------------------------|-----------------------|
| 가입대상  | 파워요트, 세일링요트                 |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
| 성격    | 자산 보호(선체 및 속구)<br>및 배상책임 보장 | 법적 의무 가입<br>(수상레저안전법) |
| 핵심 보장 | 선체 파손, 구조비, 배상책임            | 대인/대물 배상, 탑승자 상해      |

### III. 보험 가입 및 보상 절차

#### [계약의 체결]

| 단계                 | 주체    | 비고                                                                                                                        |
|--------------------|-------|---------------------------------------------------------------------------------------------------------------------------|
| 보험료 산정 의뢰          | 보험계약자 | 필요서류* 구비                                                                                                                  |
| 보험료 안내             | 보험사   | 보험조건 제시                                                                                                                   |
| 청약서 날인 및<br>보험료 납입 | 보험계약자 | <b>※ 가입 시 필요서류</b><br>-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br>- [개인인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br>- 질문서 서명본<br>- 안전검사증, 수상레저기구등록증<br>- 매매계약서 등 가입금액 증빙자료 |
| 보험증권 발행            | 보험사   |                                                                                                                           |

#### [손해의 보상]

| 단계                        | 주체    | 비고                                                 |
|---------------------------|-------|----------------------------------------------------|
| 사고통보 및 접수                 | 보험계약자 | 구두, 문서, 전화<br>사고일시, 사고내용 및 손해내용                    |
| 사고 현장 조사                  | 보험사   | 자체조사 또는 위임조사<br>사고원인, 내용 및 손해액 평가                  |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br>및 보험금 지급안내 | 보험사   | 청구서류 검토 및 보완<br>면책사유 발생시 면책통보<br>지급조건 검토 및 지급금액 산정 |
| 보험금 수령                    | 피보험자  |                                                    |

## IV. 보험료 예시

### [예시 조건]

- 요트 선령 : 8~10년
- 배상책임 보장한도 : 대인 1.5억, 대물 5억
- 자기부담금 : [선체사고] 선체가입금액의 10%  
(폭풍으로 인한 사고 또는 선령 25년 초과 요트의 전손사고 시 25% 추가)  
[배상책임사고] 손해액의 10%

※ 선박 연령 등 예시 조건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용 · 업무용 요트]

| 구분         | 선체 가입금액     | 연간 보험료 (예시)   |
|------------|-------------|---------------|
| 소형<br>파워요트 | 5천만원 ~ 7천만원 | 약 79만원~120만원  |
| 중형<br>파워요트 | 1억원         | 약 135만원~171만원 |
| 대형 요트      | 3억원         | 약 355만원~425만원 |

### [사업용 요트]

| 구분         | 선체 가입금액     | 연간 보험료 (예시)   |
|------------|-------------|---------------|
| 소형<br>파워요트 | 5천만원 ~ 7천만원 | 약 95만원~143만원  |
| 중형<br>파워요트 | 1억원         | 약 169만원~209만원 |
| 대형 요트      | 3억원         | 약 465만원~542만원 |

※ 상기 보험료 예시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가입 보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 V.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요트보험 가입은 의무인가요?

A1. 아닙니다. 기존의 의무보험인 수상레저종합보험과는 다르게 요트 자체의 손해 및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임의보험입니다.

### Q2. 중고 요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다만 선령(배의 나이)이 오래된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의 검사보고서를 요청하거나 인수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3. 요트에 실린 개인 소지품도 보상되나요?

A3.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요트 자체와 고정된 장비품은 보장합니다.

### Q4. 엔진 고장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A4.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성 파손은 보장되지만, 노후화로 인한 마모나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한 기계적 고장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Q5.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추가 특별약관이 있나요?

A5.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특별약관의 추가를 검토 중입니다.

- 1) 무보험 요트와의 충돌로 인한 탑승객의 상해 사고
  - 2) 보장되지 않는 사고로 인한 요트 고장 시 긴급 예인 서비스 등
- 단, 상황에 따라 특별약관의 추가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꼭 확인하세요!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을 계약하기 전에 꼭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을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 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 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제(취급)보험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DB손해보험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금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보험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금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 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DB손해보험이 보장을 시작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약일 부터 보장이 시작되지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계약 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 시를 말함 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D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 휠체어, 의류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 DB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요트는 항상 면허를 소지하고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최대 승선정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선외 모터의 이탈 및 추락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경주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인 항해 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개인 소지품이나 고가품, 예술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정비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발생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정비 기한이 지난 상태는 다음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기대되는 유지보수 및 점검 작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거나, 수행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
- 보험계약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알고 있는 요트 또는 추진 장치의 고유한 결함을 수리하거나 수리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
- 인지된 고유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취하지 않은 것
-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금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 방법에서 따라 결정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비례보상 안내

배상책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범금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 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당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당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하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 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고객센터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맹동로 54(두성리 600)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 융 감 독 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홈페이지 : [www.fss.or.kr](http://www.fss.or.kr)

손 해 보 함 협 회 상담전화 : 02-3702-8585, 8619 / 홈페이지 : [www.knia.or.kr](http://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